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배정기준 등에 관한 세칙

제정 2009.07.27.

개정 2018.05.02.

1.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시 구비 서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별지 1 예시 공고문 등을 사용하여 장학생 선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함.

● 장학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장학금 선정신청서

- (1) 장학금 수혜현황: 기존의 교내외 수혜경위와 액수
- (2) 장학생 선정신청사유: 단순히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는 정도의 추상적 사유로는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선정신청사유는 학생지원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만약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나. 첨부서류

- (1) 선택적인 첨부서류: 아래 사항이 첨부되면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음.
 - (a)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부모, 배우자 등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b)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서는 최근 1년간의 납부실적(필요한 경우 이전의 납부실적 포함)을 나타내야 함.
 -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 본인의 것을 각기 제출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 (c) 세목별 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행)
 - 최근 1년간의 납부실적
 -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 본인의 것을 각기 제출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 필수세목은 주택, 토지, 건물임
 - 과세내역이 없을 경우: 증명서상에 과세사실 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d)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직장 발행)
 - 최근 1년 귀속분에 관한 증명서임
 -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제출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f)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g) 기타 가계곤란사유에 관한 증빙

2. 소득기준 장학금의 배정기준

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함.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하여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 제외함.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2) 차상위계층
- (3) 특수교육대상자(1급 - 3급 장애인)
- (4) 국가유공자(본인)
- (5) 농어촌지역 출신자

나. 그 이외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순서대로 약 20명 내외(위 ‘가’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그 이후 약 20명에 대하여는 반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함

는 것을 원칙으로 함(외부장학금 수혜자는 위 숫자에 포함시킴)

다. 경제적 환경의 평가는 다음에 의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구간 판정결과
- 서울대학교 본부가 매년 제시하는 『맞춤형 장학금』 지급기준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국민 개개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 지표로 사용하고, 가계의 연소득, 자산 및 부채의 정도, 가족 중 환자부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예시: 월 건강보험료 납입평균액이 5만원 이하이면 전액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0만원 이상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3. 근로봉사장학생의 선발기준

가. 근로봉사장학생은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됨

나. 근로봉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사전 공고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별지 2 공지문 참조).

다. 사전 공지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다수인 경우 학생지원위원회에서 근로봉사장학생을 선정함.

부칙 <2009.7.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